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7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7월 27일

3. 제 안 이 유

가.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개별조례로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로 일원화하고

나. 일부사무의 신규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

4. 주 요 골 자

가.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

- 사회복지사업법 개정(99. 4. 30)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업무의 조문정비 (사회복지과)
- 장애인복지법 개정(99. 2. 8)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업무가 시·군으로 이관되어 위임조항 삭제 (사회복지과)
- 전염병예방법 개정(99. 2. 8)에 따른 소독업의 허가사항이 신고 사항으로 변경 (보건위생과)
- 공중위생법 제정(99. 2. 8)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를 면허정지로 조문정비 (보건위생과)

- 양곡관리법 개정('99. 1. 21)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조문정비 (원예유통과)
-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('99. 1. 28)으로 체육시설업 중 신고업종에 대한 업무가 시·군자치사무로 이관되어 관련조문을 삭제 (체육청소년과)
- 자동차관리법 개정('99. 4. 15)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시·군자치사무로 이관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, 자동차등록업무 및 이륜자동차관련업무 조문정비 (교통도로과)
- 삭도·케도법 개정('99. 2. 8)으로 관련조문 정비(교통도로과)

나. 개별 조례로 규정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 일원화

- 종전의 농지개량관리조례에 규정된 수리계 관련업무를 위임조례로 일원화 (농산지원과)
-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한 위임업무를 위임조례로 일원화 (지역개발과)
-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'99. 4. 15)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업무가 도업무로 이관되어 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(지역개발과)
- 도시계획법 개정(2000. 1. 28)으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업무가 시·도사무로 이관되어 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 (지역개발과)
- 건설기계관리법 개정('99. 1. 29)으로 관련조문 정비 및 건설기계사업 관련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규칙을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 (지역개발과)

다. 신규 위임사무

-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, 영업정지,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신규위임 (경제과)
-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등 관련업무를 신규 위임 (체육청소년과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바
-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
- 구조조정 등으로 시·군 직원의 감원으로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및 업무처리 지연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